

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4. 11. 26.

제안자 : 이정기 의원외 2 인

1. 제안이유

- 계룡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)
- 미술장식의 설치 및 절차와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4조~제5조)
-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)
-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)
- 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한 규정 (안 제8조~제12조)
- 미술장식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(안 제13조)
- 위원회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 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, 제11조
- 동법시행령 제23조, 제24조,
-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

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예술공간"이라 함은 공연, 전시, 문화보급 및 전파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써 영 제1조의 2에서 정하는 문화 시설의 종류를 말한다.
2. "미술장식"이라 함은 영 제2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회화, 조각, 공예, 사진,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, 분수대,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을 말한다.

제3조 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) 계룡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·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3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
4. 판매 및 영업시설
5. 의료시설 중 병원
6. 업무시설
7. 숙박시설
8. 위락시설
9.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, 통신전화국, 통신용 시설,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

제4조 (미술장식의 설치 및 절차) ①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

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(이하 "건축주" 라 한다)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당해 건축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
제5조 (미술장식의 설치 확인) 시장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· 통지를 한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

제6조 (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) 영 제24조 제5항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: 1,000분의 1이상
2.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: 1,000분의 5이상

제7조 (미술장식의 가격결정) ①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하되, 사회통념상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

②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설치할 경우의 가격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.

③시장은 미술장식의 공정한 가격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관계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 (위원회 설치) 영 제2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

제9조 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-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
- ③위원은 복지문화과장, 도시주택과장, 시의회 의원 1인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희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
-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⑤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

제10조 (위원회 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

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
-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

제11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미술장식 가격의 적합성
2. 미술장식의 예술성 및 공공성
3. 미술장식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
4.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
5.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

제12조 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6개월이상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2. 품위손상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3. 거주이전, 본인 자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참가 할 수 없을 때
4. 시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전보 되었을때

제13조 (미술장식의 유지관리) ①건축주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교환, 대체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

②시장은 설치된 미술장식이 건축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 또는 망실 등이 발생하여 예술·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나 보수를 명할 수 있다, 다만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

제14조 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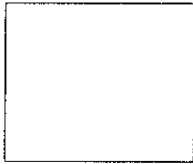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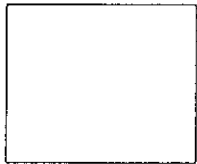
[별지 제1호서식]

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

설치대상지	계룡시 면 동 리 번지				
건축연면적	m'		용 도		
건 축 주	주 소				
	성 명(대표자)				
	주민등록(사업자)번호		()		
작 가	주 소				
	성 명		※ 다수인의 경우는 별지작성		
	주민등록(사업자)번호		()		
작 품 명		규 격		단 가 또 평 가 액	천 원
설 치 계 획	※ 배치계획도 첨부				
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 설치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심의를 신청합니다. 신청인 : 주소 성명 (인) 계 룡 시 장 귀하					
첨부서류	1. 작가와 건축주간의 계약서 1부(원본대조필: 건축주) 또는 작품의 공인기관 감정평가서 1부 2. 기증서(기증품인 경우) 1부 3. 배치 계획도 1부. 4. 작품 내역 또는 설명서 1부. 5. 작가 약력 및 경력 증명(사실확인원) 1부. 6. 기타 작품 구상안 등 참고자료 1부.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결정 통지서

문 접 수 번호	호 (. . .)		
위 치	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		
건축주 (수신자)	귀하		
작 가			
결정사항	가결 	보완 	부결 
결정이유	※ 불 임 참 조		
이행사항			
권장사항			
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계 룡 시 장			

[별지 제4호서식]

미술장식 설치 변경 신고서

신고번호	- 호					
위 치						
건 축 주	당 초	주 소		변 경	주 소	
		성 명			성 명	
		주민(사업자) 번 호			주민(사업자) 번 호	
변경내역 기 재	많을시 첨부 기재요					
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신고합니다. 신고자 : 주 소 성 명 (인) 계 룡 시 장 귀하						
첨 부	1. 변경위치 또는 변경내역 1부. “끝”					